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북방 등 외교다변화를 위해 외교부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에 각각 1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8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해외안전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평택지역 SOFA 국민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외교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외교원에 외교센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7급 2명, 9급 3명)을,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신남방정책 추진 및 경제협력에 필요한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공공외교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재외국민보호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3명(3등급 또는 4등급 33명)을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의 평가대상 조직 중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에 두는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관 밑에 두는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에 두는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유럽국에 신설되는 1개 과 및 아프리카중동국에 신설되는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인력 1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규정하며, 직제상 국가명 표기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명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국 요청에 따른 경미한 개정소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3.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제17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미합중국”을 각각 “미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유럽과 · 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서유럽과 · 중유럽과 · 유라시아1과 및 유라시아2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그리스 · 독일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마케도니아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터키 · 폴란드 · 헝가리”를 “그리스 · 독일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마케도니아 · 몬테네그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슬로바키아 · 슬

로베니아·알바니아·오스트리아·체코·코소보·크로아티아·터키·폴란드·헝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를 “흑해 경제 협력 기구(BSEC)”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제1호 중 “러시아연방·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즈·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몰도바·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조지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라시아과장”을 “유라시아2과장”으로 한다.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력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⑥ 유라시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러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러시아의 대 한반도·동북아 정책에 관한 업무
3. 러시아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러시아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5. 러시아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중동1과·중동2과 및 아프리카과”를 “중동1과·중동2과·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2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리비

아 · 모로코 · 모리타니아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를 “리비아 · 모로코 · 모리타니아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예멘 · 오만 · 카타르 · 쿠웨이트 · 튀니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프리카과장”을 “아프리카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소말리아 · 수단 · 시에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기니 · 중앙아프리카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을 “나미비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레소토 · 르완다 · 말라위 · 모잠비크 · 보츠와나 · 부룬디 · 소말리아 · 수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지부티 · 짐바브웨 · 케냐 · 탄자니아 및 그 지역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이지리아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마다가스카르 · 말리 · 모리셔스 · 베냉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시에라리온 · 적도기니 · 중앙아
프리카공화국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
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 · 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
항

4. 아프리카연합((AU)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외교에 관한 사항

6. 한 · 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 · 감독

제34조제2항 중 “124명”을 “125명”으로, “28명”을 “29명”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251명”을 “266명”으로, “91명”을 “106명”으로 한다.

별표 1 총계 “940”을 “95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36”을 “951”로 하며, 일반직 계 “234”를 “236”으로 하고, 사
서주사보 “7”을 “8”로 하며, 행정서기보 “21”을 “22”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94”를 “707”로 하며, 8등급 외무공무원 “65”를 “67”로 하고, 7등급
외무공무원 “18”을 “19”으로 하며, 5등급 ·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9”를 “164”으로 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0”을 “125”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947”을 “96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943”을 “958”로 하며, 일반직 계 “235”를 “237”로 하고, 사서주사보 “7”을 “8”로 하며, 행정서기보 “21”을 “22”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0”을 “713”으로 하며, 8등급 외무공무원 “65”를 “67”로 하고, 7등급 외무공무원 “18”을 “19”으로 하며,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9”를 “164”으로 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2”를 “127”로 한다.

별표 2 총 계 “100”을 “1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9”를 “65”로 하며, 사서사무관 1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4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5”를 “8”로 한다.

별표 2의2 총계 “101”을 “107”로 하고, 일반직 계 “59”를 “65”로 하며, 사서사무관 1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4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5”를 “8”로 한다.

별표 3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365”를 각각 “1,411”로 하고, 9등급 외무공무원 “123”을 “124”로 하며,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61”을 “271”로 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02”를 “237”로 한다.

별표 5 제1호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3월 31일”을 각각 “2022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3) 및 4)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5)를 3)으로 하고, 같은 표 6)을 4)로 하며, 같은 표 7)부터 10)

9) 유럽국 유라시아2과	2명 (8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10) 아프리카중동국 아프리카2과	3명 (8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9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에 9)와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15명 (3등급 또는 4등급 1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u>
<u>3. ~ 7. (생 략)</u>	<u>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u>
⑤ 정세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5.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u>	<u><삭 제></u>
<u>6. (생 략)</u>	<u>5. (현행 제6호와 같음)</u>
제17조(북미국) ① ~ ③ (생 략)	제17조(북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u>미합중국</u> 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1. <u>미국</u> ----- -----
2. <u>미합중국</u> 의 대 한반도 · 동북	2. <u>미국</u> -----

아정책에 관한 업무	-----
3. <u>미합중국</u> 의 대외정책·대외 관계에 관한 업무	3. <u>미국</u> ----- -----
4. <u>미합중국</u>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4. <u>미국</u> ----- -----
5. <u>미합중국</u> 과의 양자간 경제외 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u>미국</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⑤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⑤ ----- -----.
1. <u>미합중국</u> 의회에 관한 업무	1. <u>미국</u> -----
2. <u>미합중국</u> 내 주정부, 북미 지 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에 관한 업무	2. <u>미국</u>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⑥ 한미안보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⑥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한 <u>미합중국</u> 군대와 관련 된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2. --- <u>미국</u> ----- -----
3. <u>미합중국</u> 의 대외 안보·군사 정책에 관한 업무	3. <u>미국</u> ----- -----
⑦ 한미지위협정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⑦ ----- -----.
1. 주한 <u>미합중국</u> 군대의 지위 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	1. --- <u>미국</u> ----- -----

및 지원 2. 주한 <u>미합중국</u> 군대의 지위 협정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한 <u>미합중국</u> 군대 관련 SO 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제19조(유럽국) ① (생략) ② 유럽국에 <u>서유럽과 · 중유럽 과 및 유라시아과</u>를 둔다. ③ · ④ (생략) ⑤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그리스 · 독일 · 루마니아 · 리 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마 케도니아 · 몬테네그로 · 몰도 바 · 벨라루스 ·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 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슬 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 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알바 니아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 나 · 조지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터키 · 폴란드 · 헝가리</u> 및 그 지역에 관한 외 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 2. --- <u>미국</u> ----- ----- 3. --- <u>미국</u> ----- ----- 제19조(유럽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유럽과 · 중유럽과 · 유라시아1과 및 유라시아2과</u>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u>그리스 · 독일 · 루마니아 · 리 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마 케도니아 · 몬테네그로 · 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 위스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 아 · 알바니아 · 오스트리아 · 체코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터키 · 폴란드 · 헝가리</u> ----- ----- ----- ----- ----- -----
--	--

2. 3. (생략)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 및 그 밖의 유럽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신설>

⑥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러시아연방·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즈·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2. 3. (현행과 같음)

4. 흑해 경제 협력 기구(BSEC)

--

⑥ 유라시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러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러시아의 대 한반도·동북아 정책에 관한 업무

3. 러시아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러시아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5. 러시아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⑦ 유라시아2과장-----
-----.

1. 몰도바·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조지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3. (생략)

<신설>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생략)

②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
· 중동2과 및 아프리카과를 둔다.

③·④ (생략)

⑤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리비아·모로코·모리타니아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알제리
·예멘·오만·카타르·쿠웨
이트·튀니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 4. (생략)

⑥ 아프리카과장은 다음 사항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2.·3. (현행과 같음)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
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
정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동1과·
중동2과·아프리카1과 및 아프
리카2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리비아·모로코·모리타니아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알제리·예멘
·오만·카타르·쿠웨이트·
튀니지 -----

2. ~ 4. (현행과 같음)

⑥ 아프리카1과장-----

분장한다.

1.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
지리아 · 남수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
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셔
스 · 모잠비크 · 베냉 · 보츠와
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
이셴 · 소말리아 · 수단 · 시에
라리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기니 ·
중앙아프리카 · 지부티 · 짐바
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
르데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
부아르 · 콩고공화국 · 콩고민
주공화국 · 탄자니아 · 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 4. (생략)

5. 한 · 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
도 · 감독
<신설>

-----.

1. 나미비아 · 남수단 · 남아프리
카공화국 · 레소토 · 르완다 ·
말라위 · 모잠비크 · 보츠와나
· 부룬디 · 소말리아 · 수단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
티니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지부티 · 짐바브웨 ·
케냐 · 탄자니아 및 그 지역에
관한 -----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⑦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이지리아 · 니
제르 · 라이베리아 · 마다가스
카르 · 말리 · 모리셔스 · 베냉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프린
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시에
라리온 · 적도기니 · 중앙아프
리카공화국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코모로 · 코트디
부아르 · 콩고공화국 · 콩고민
주공화국 · 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 ·
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프리카연합((AU)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
괄 · 조정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외
교에 관한 사항
6. 한 · 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
도 · 감독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u>124명</u>(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6등급 42명, 3등급·4등급 <u>28명</u>,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략)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251명</u>(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6등급 96명, 3등급·4등급 <u>91명</u>)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125명</u>----- ----- ----- <u>29명</u>----- ----- -----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266명</u>----- ----- ----- <u>106명</u>-----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0</u>	<u>955</u>	+15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936</u>	<u>951</u>	+15
·	·	·	
·	·	·	
일반직 계	<u>234</u>	<u>236</u>	+2
·	·	·	
·	·	·	
사서주사보	<u>7</u>	<u>8</u>	+1
·	·	·	
·	·	·	
행정서기보	<u>21</u>	<u>22</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694</u>	<u>707</u>	+13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5</u>	<u>67</u>	+2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8</u>	<u>19</u>	+1
•	•	•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159</u>	<u>164</u>	+5
영사직공무원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u>120</u>	<u>125</u>	+5
영사직공무원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7</u>	<u>962</u>	+15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943</u>	<u>958</u>	+15
·	·	·	
·	·	·	
일반직 계	<u>235</u>	<u>237</u>	+2
·	·	·	
·	·	·	
사서주사보	<u>7</u>	<u>8</u>	+1
·	·	·	
·	·	·	
행정서기보	<u>21</u>	<u>22</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0</u>	<u>713</u>	+13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5</u>	<u>67</u>	+2

•	•	•	
7등급 외무공무원	<u>18</u>	<u>19</u>	+1
•	•	•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159</u>	<u>164</u>	+5
영사직공무원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u>122</u>	<u>127</u>	+5
영사직공무원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0</u>	<u>106</u>	+6
·	·	·	
·	·	·	
일반직 계	<u>59</u>	<u>65</u>	+6
·	·	·	
사서사무관	1		
<u>공업사무관</u> 또는	<u><신 설></u>	<u>1</u>	+1
<u>시설사무관</u>			
·	·	·	
·	·	·	
행정주사보	4		
<u>공업주사보</u> 또는	<u><신 설></u>	<u>2</u>	+2
<u>시설주사보</u>			
·	·	·	
·	·	·	
방호서기보	<u>5</u>	<u>8</u>	+3
·	·	·	
·	·	·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1</u>	<u>107</u>	+6
·	·	·	
·	·	·	
일반직 계	<u>59</u>	<u>65</u>	+6
·	·	·	
사서사무관	1		
<u>공업사무관</u> 또는	<u><신 설></u>	<u>1</u>	+1
<u>시설사무관</u>			
·	·	·	
·	·	·	
행정주사보	4		
<u>공업주사보</u> 또는	<u><신 설></u>	<u>2</u>	+2
<u>시설주사보</u>			
·	·	·	
·	·	·	
방호서기보	<u>5</u>	<u>8</u>	+3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65</u>	<u>1,411</u>	+46
외무공무원 계	<u>1,365</u>	<u>1,411</u>	+46
·	·	·	
·	·	·	
9등급 외무공무원	<u>123</u>	<u>124</u>	+1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261</u>	<u>271</u>	+10
영사직공무원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u>202</u>	<u>237</u>	+35
영사직공무원			
·	·	·	
·	·	·	